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보다나은 정부

2018년 9월 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 4.(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9. 4. (화)	담당부서	유통물류과
담당과장	서기웅 과장(044-203-4380)	담 당 자	강환일 사무관(044-203-4389)

산업부,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 전국 대형마트,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등 대상으로 점검 -
- 최근 자영업자 경영 어려움을 감안, 지도 및 홍보에 중점 -

□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9. 5.(수) ~ 14.(금)** 간 가격표시 관련 관계기관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 특별시, 광역시는 매장면적 17㎡ 이상 소매점포 대상

- 점검반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했다.

□ 합동점검에서는 추석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 판매가격표시 : 대형마트 등 51개 소매업종 관련 소매점포 내 품목
** 단위가격표시 : 가공식품(62), 일용잡화(19), 신선식품(3) 등 84개 품목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 가전(10), 의류(23), 기타용품(14) 등 47개 품목

○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처벌**' 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 배포, 영세점포 대상 판매가격 라벨 제공 등

○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하기로 했다.

* (가격 허위표시, 未표시) 1차 시정권고~5차 이상(10백만원), (표시방법 위반) 1차 시정권고~5차 이상(5백만원), (권소가 표시위반) 1차(5백만원)~2차 이상(10백만원) 등

□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표시제가 안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 "**가격표시제 관련 불편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지난 8. 27. ~ 9. 21.**까지 소매점포 등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

【붙 임】 1. '18년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계획 1부.
2.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강환일 사무관(☎044-203-43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8년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계획(안)**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고시)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태에 대해 점검

◈ **지자체**에서 실태점검을 추진하되, 필요 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실시

□ 목 적

○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서민물가안정 도모하고,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함)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가격표시제 개요>

○ **(도입 목적)** 판매업자에게 해당물품의 판매가격 등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하기 위함

○ **(법적 근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기재부), 「소비자기본법」(공정위)에 따라 산업부 고시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운영중

* 가격표시제 고시 운영 부처: 석유/액화석유가스/공산품(산업부), 화장품(식약처), 배합사료/농기계/종자가격(농림부), 의약품/의약외품(복지부) 등

○ **(점검체계)** 가격표시 **지도·점검**'은 **시·도지사에 위임**, 정기·수시 점검 후 산업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

* 위반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는 시정권고, 2차 이후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 **(종류)** ① 판매가격 표시의무 :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 표시
② 단위가격 표시의무 : 상품의 단위당(g, ㎖) 가격의 표시
③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소가 표시금지

구분	근거	최초 도입시기	표시대상	대상점포
판매가격 표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73.5.24 ('73.6.1 시행)	백화점, 수퍼마켓 등 공산품 판매 51개 소매업종 관련 소매점포 내 모든 품목	• 33㎡(대도시 17㎡) 이상 소매점포 •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 모든 점포 • 시·도지사 지정 소매점포
단위가격 표시*		'99.6.25 ('00.1.1 시행)	가공식품(62), 일용잡화(19), 중량표기된 농수축산물(3) 등 84개 품목	•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 모든 점포 • 준대규모점포(대기업과 대규모점포 경영회사 및 그 계열사의 직·가맹 슈퍼마켓)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99.6.25 ('00.1.1 시행)	가전제품(10), 의류(23), 기타(14) 등 47개 품목	• 권소가 표시 금지 제품 판매 모든 소매점포

Indus

□ 추진계획

○ **(점검대상)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165㎡ 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시·군·구별 **6곳 이상**), **대규모점포,** 편의점, SSM(시·군·구별 **3곳 이상**)

○ **(점검방식) 지자체 자체점검**(시·군·구) 및 관계기관 특별 **합동점검** 병행 실시

► 점검기간 : (지자체) '18.8.27 ~ 9.21, (합동점검) 9.5 ~ 14
► 합동점검 부처 : 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지자체·소비자원

○ **(점검내용)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 및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 대상 집중 점검

- **추석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가격표시
- **상점가**(완구, 악기, 운동용품 등),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가격표시

* 가격표시대상 매장면적 : (특별시·광역시) 17㎡, (기타) 33㎡

-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관광특구** 내 소매점포 가격표시
- **농약 및 비료판매점** 가격표시

*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 **대규모점포** 가격표시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지도 및 홍보**에 중점

- 다만, 위반 소매점 대상 **추가 점검**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

* (**가격 허위표시, 未표시**) 1차 시정권고~5차 이상(10백만원), (**표시방법 위반**) 1차 시정권고~5차 이상(5백만원), (**권소가 표시위반**) 1차(5백만원)~2차 이상(10백만원) 등

붙임 2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 안내

가격표시제란?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

가격표시제 주요내용

판매가격 표시

구분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 경과	근거
판매가격 표시	판매업자	• 대규모점포 • 33㎡(대도시 17㎡) 이상 소매점포 • 시·도지사지정시상 또는 지역	백화점, 슈퍼마켓 등 상계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73년 최초 도입 후 표시대상 지속 확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판매가격 : 판매(소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동일 상품의 경우에도 점포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 표시방법 : 라벨, 스탬프, 꼬리류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함(예 : 판매가 000원 또는 ₩ 000 등)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 가능(예 : 품목 000, 판매가 000원 등)
- 표시크기 : 15포인트 이상(글자당 크기 : 가로 3mm X 세로 4mm)

단위가격 표시

구분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 경과	근거
단위가격 표시	판매업자	•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 슈퍼규모점포(대기업 및 대규모점포 관련사업 그 계열회사의 SSM · 기업형슈퍼마켓)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84개 품목	• '99년 최초 도입(15종) • 확대('04 33종→'09 53종→'13 84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단위가격 :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 : 10㎖, 100g 등)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
- 품목 선정기준 : 상품의 용량, 규격 등의 종류가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 표시방법 : 라벨, 스탬프, 꼬리류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함(예 : 00g당 가격 000원)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별도 표시 가능(예 :

품목	내용량	판매가격	10㎖당 가격
ㅇㅇ 참기름	300㎖	4,770원	159원

- 표시크기 : 10포인트 이상(글자당 크기 : 가로 2mm X 세로 3mm)

권장소비자가격 등 표시금지

구분	의무자	대상점	대상품목	주요 경과	근거
권장가격 표시금지	사업자(제조·유통·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해당 없음	가전제품, 의류 등 47개 품목	• '99년 최초 도입(12종) • 변경('04 32종→'09 27종→'13 23종→'17 47종)	소비자기본법 제12조

- 권장소비자가격 등 :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
- 품목 선정기준(부당행위 유형)
 - 대리점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써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
 -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
- 표시방법 : 표시금지 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에 권장소비자가격등의 표시를 해서는 안됨

Indus

산업통상자원부

단위가격 표시의무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품목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구분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총84종	(62종) 햄류(10g), 우유(100㎖), 설탕(100g), 커피(액상제외)(10g), 치즈(10g), 식용유(100㎖), 참기름(10㎖), 마요네즈(100g), 간장(100㎖), 된장(10g), 식초(10㎖), 혼합조미식품(10g), 식염(100g), 참치캔(10g), 라면(1개), 분유(100g), 우산글발초콜릿(10㎖), 고추장(100g), 된장(100g), 과·채주스(100㎖), 소스류(액상제외)(100㎖), 소스류(액상제외)(100g), 케찹(100g), 청국장(100g), 밀가루(100g), 어묵(100g), 국수(100g), 두부(100g), 조미김(10g), 과자(10g), 껌(10g), 캔디류(10g), 빙과류(10g), 아이스크림류(10g), 초콜릿류(10g), 초코파이성자(10g), 햄류(100g), 베이컨류(10g), 소세지류(10g), 만두류(냉동)(100g), 젓갈(10g), 액젓(10㎖), 차류(액상제외)(10g), 과·채음료(100㎖), 탄산음료(100㎖), 코코아(10g), 식물성크림(커피용)(10g), 마가린(100g), 쇼트닝(100g), 스파게티(100g), 에틴류(100g), 마가린류(100g), 설물(100g), 행가루(100g), 행류(10g), 시로일(10g), 식용기름(100㎖), 꿀인류(100㎖), 생선통조림(10g), 생수(100㎖), 주류(100㎖), 드레싱(100㎖), 건포류(중량단위)(100g)	(19종) 랩(m), 호일(m), 화장지(롤)(10m), 분날세제(100g), 섬유유연제(100㎖), 종이기저귀(개), 생리대(개), 세면비누(고형)(개), 샴푸(100㎖), 린스(100㎖), 주방세제(액상)(100㎖), 칫솔(개), 치약(10g), 티슈(상자)(10매), 위생백(상), 가루비누(100g), 세탁비누(고형)(100g), 세탁비누(액상)(100㎖), 합성세제(액상)(100㎖)	(3종) 농산물(중량단위)(100g), 수산물(중량단위)(100g), 축산물(중량단위)(100g)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품목

구분	가전제품	의류	기타
총 47종	(10종) TV,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23종) 남자외의, 남자상의, 남자학생복, 남자하의, 남자내의, 예복외의, 예복하의, 여자학생복, 여자하의, 여자내의, 정장, 티셔츠, 스웨터, 청바지, 운동복, 등산복, 아동복, 유아복, 양말, 모자, 넥타이, 장갑	(14종) 운동화, 라이터선, 클레불레이트,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픈레인지를 포함한다),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디스크탑), 컴퓨터(모니터), 노트북컴퓨터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부과대상자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	과태료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표시의무자	시정권고	30~50	50~100	200~500	500~1,000
○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단위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표시의무자	시정권고	20~30	30~50	100~200	300~500
○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는 행위	표시한 자	500	1,000			
○ 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 가격표시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 가격표시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명령위반자	시정권고	100	300	500	1,000

※ 근거법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 「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20조,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 위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정 가능(상세한 감정 기준은 위 근거 법령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044-203-4389), 각 시·도 및 시·군·구 경제정책과